##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7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박홍근 • 이건태 • 한민수

이수진 • 박상혁 • 한정애

박홍배 • 박주민 • 조정식

정을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출자금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 ① 기획재 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제3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는 출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출자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출자금 출자 실적 등에 대한 평가 및 국회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 구 출자금(제3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는 출자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출자 실적 및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출자 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